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20
----------	-------

발의연월일 : 2026. 5. 19.

발 의 자 : 양부남 · 김한규 · 김문수
윤준병 · 이정문 · 김준혁
박정현 · 박균택 · 전진숙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지침을 제정·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관리지침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학교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교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관련한 안전사고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이 포함된 안전사고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교육활동 중 안전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안전사고표준지침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나 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
- 다.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항 신설).
- 라.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안전사고로 교직원이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받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감독 표준지침)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의 유형, 이동수단, 학생의 연령, 활동 장소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사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안전사고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표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의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
2. 학생 이동(승차·하차를 포함한다) 시 인솔 및 보호·감독 기준
3. 활동 장소 및 시설의 사전 안전점검 기준 및 위험요인 조치 기준
4. 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보고 및 연계 절차
5. 그 밖에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안전사고표준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교육청, 교원단체 및 안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사고관리 지침을”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이하 “안전사고관리지침”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사고관리 지침에”를 “안전사고관리지침(안전사고표준지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를 “안전사고관리지침에”로, “다한 경우에는”을 “다하였거나 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안전사고표준지침을 함께 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보조인력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2. 보조인력의 안전관리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3. 보조인력의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2장에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교육활동 관련 사고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소속 교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거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최초 조사 단계부터 해당 교직원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변호인의 선임 지원 또는 교육청이 지정·위촉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
2. 진술, 자료 제출 등 수사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3. 민사절차(조정·소송을 포함한다)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및 지원

③ 교직원이 서면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9조의2(사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감독 표준지침)</u></p> <p><u>①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의 유형, 이동수단, 학생의 연령, 활동 장소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사전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안전사고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p> <p><u>② 안전사고표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의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u> <u>2. 학생 이동(승차·하차를 포함한다) 시 인솔 및 보호·감독 기준</u> <u>3. 활동 장소 및 시설의 사전 안전점검 기준 및 위험요인</u>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생략)
<신설>

전사고표준지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⑤ -----
-----안전사고관리지침에-----

-----다하였거나 다하지 못한 경우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보조인력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2. 보조인력의 안전관리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②·③ (생략)

<신설>

3. 보조인력의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0조의5(교육활동 관련 사고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소속 교직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거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 최초 조사 단계부터 해당 교직원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변호인의 선임 지원 또는 교육청이 지정·위촉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

2. 진술, 자료 제출 등 수사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3. 민사절차(조정·소송을 포함한다)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및 지원

③ 교직원이 서면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